



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

제3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(제2차 교육위원회)
2018. 3. 27 (화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

교 육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최광주

충청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정 영 수 의원 등 6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18년 3월 14일

○ 회부일자 : 2018년 3월 15일

3. 제정 이유

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에 따라 다자녀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정부의 출산 장려정책에 부응하고자함.

4. 주요내용

○ 조례에 사용된 용어 정의(안 제2조)

- “다자녀 학생”, “교육비”, “수익자부담경비”

○ 적용범위를 규정함(안 제3조)

-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,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다자녀 학생

○ 교육비 지원 범위를 규정함(안 제4조)

- 수업료, 입학금, 입학준비물품 구입비, 수익자부담경비 등

- 매년 지원 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(안 제5조)
- 교육비 지원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 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
 - 지원대상자의 신분변동으로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최근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출산장려 문화 조성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음.
- 2017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.06명으로 OECD 35개 회원국 중 꼴찌이며, 우리 충북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여서 최근 3년 간 도내 합계 출산율이 평균 1.3명대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(2014년 1.37명, 2015년, 1.41명, 2016년 1.39명). 학생 수도 해마다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고, 이에 따라 폐교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임.
- 따라서, 본 조례 제정은 상위법 위반 사항이 없고,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지역사회의 출산 장려 문화 조성 및 출산장려 정책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 사료됨.
- 다만,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우리 도의 다자녀 교육비 지원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도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확한 현황 조사와 조례에서 담고 있는 각종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을 위한 예산산출 및 예산확보에 대한 세부방안 마련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됨.